

충남의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방안

성태규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tgsung@cni.re.kr

이 연구는 충남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 분석을 통해 법률적, 인식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CONTENTS

1.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
2. 설문조사 분석
3. 심층 인터뷰 조사 분석
4. 정책제언

요약

- ◀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는 크게 법률적, 인식적,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됨.
- ◀ 2013년부터 청소년 단시간 근로환경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욕설·폭언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부당행위를 경험하는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 충남도는 음식점 등 소규모 개인사업주의 노동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함. 학교 안팎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함
-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률개정도 요구됨.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청소년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현재 성과 중심의 평가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 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교과목에 추가하고, 교사들의 노동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연수교육에 노동인권을 포함해야 하며, 노동인권 교육을 일반고까지 확대해야 함

01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

- 우리 주변의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노동하고 있음. 학업에 몰두하여야 할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등한시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들의 취업 형태가 주로 아르바이트에 집중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2013년부터 청소년 단시간 근로환경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욕설, 폭언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부당행위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청소년 노동인권의 발생과 개선 분야는 크게 법률적 차원의 문제, 인식적 차원의 문제,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구분됨.
 - 법률적 차원에서는 인권침해를 허용할 수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함. 법률적 장치가 완비되었다 해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친분 등으로 인한 묵인 하에 법률적 의무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또는 법률적 제도를 모르고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음. 이런 문제는 인식적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함. 제도적 차원은 법·인식과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노동인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나 노동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 사후 감독 등의 개선을 의미함.
- 이런 세 가지 차원이 상호 연계되어 있을 때에 청소년 노동인권이 개선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충남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02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 본 설문조사는 충남지역 특성화고 전체 37개고를 대상으로 충남도교육청 홈페이지 (goo.gl/wg7juX)를 통해 2016년 6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함. 설문대상은 특성화고의 각 학년 당 1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현황은 <표 1>과 같음

<표 1> 응답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합계		1,337	100%
학년	재학생 1학년	429	32%
	재학생 2학년	443	33%
	재학생 3학년	465	35%
성별	남	649	51%
	여	688	49%
학교유형	공업계열 특성화고	282	21%
	상업계열 특성화고	677	51%
	농업계열 특성화고	134	10%
	마이스터고	212	16%
	종합고	32	2%

주) 비율은 학년·성별·학교유형별 합을 100%로 함

2) 조사결과

설문내용	1 <	3	> 5
	전혀 그렇지 않음	보통	매우 그러함
“노동을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평균 2.89로 보통이하로 나타남. 다만 보통이 560명(41.9%)로 긍정적 인식이 많지 않다는 점을 보았을 때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됨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노동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노동 의욕은 평균 3.47로 응답자들의 노동 의욕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진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관한 평균은 2.76으로 노동의 대가가 약간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였음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는 체면과 위신을 세울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직업이 대학 진학 동기라는 의견은 평균 2.96으로 나타남		
“3D업종은 남들이 보기 창피해서 피하고 싶다”	직업 선택 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의견은 평균 2.78로 낮게 나타남		
“보기 좋은 일은 보수가 적더라도 종사하고 싶다”	직업선택 동기 중 보수의 영향은 평균 2.7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불법적인 직장이라도 취직할 수 있다”	윤리적 기준보다 보수를 중요시한다는 의견은 평균 2.13 직업 판단 시 윤리의식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하 설문 내용에 동 기준 적용)

- 직업을 갖는 주된 목적으로는 생계유지(4.25), 전문성(3.79), 자아실현(3.78), 정신적·육체적 건강(3.59), 사회·공동체 유지발전(3.50), 명예획득(3.40) 순으로 나타났음

- 일·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중요도는 적성에 맞을 것(4.31), 일에 대한 만족도(4.31), 보상 수준(4.23), 장래성(4.14), 사내 인간관계(4.10), 재미있을 것(4.06), 자아실현(3.95) 순으로 나타났음
- ‘노동자’하면 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가 30.1%로 가장 많았으며,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가 24.3%,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가 9.5%이었음. “무식하다”는 0.6%으로 가장 적었으며, “과격하다”가 1.1%, “가난하다”가 4.6%로 응답하였음. 기타 항목에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힘들어 보인다”, “평범하다”,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함” 등이 있었음
- ‘노동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가 30.1%로 가장 많았지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24.3%), “나는 되고 싶지 않다”(9%), “불쌍하다”(8%), “가난하다”(6%), “과격하다”(1%), “무식하다”(1%) 등 부정적 이미지도 49.3%에 달하고 있음. 이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학생들도 지니고 있는 것을 보여 줌
-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24.9%는 음식점이었음. 편의점이 5.5%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패스트푸드점이 5.1%로 뒤를 이었음. 경험이 가장 적었던 업종은 PC방과 공사장으로 각각 4명(0.3%)으로 나타났음
- 아르바이트 목적은 “용돈, 통신비, 여행경비 등 특정목적의 자금을 위해서”가 평균 4.04로 가장 높았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3.61로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음. 이어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가 3.31, “미래의 진로를 위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가 3.25로 나타남.(전혀 그렇지 않음 : 1, 보통 : 3, 매우 그러함 : 5)
- 아르바이트 중 별도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의 유무
 - 아르바이트 중 별도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는 58%에 불과했으며, 없는 경우가 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 최소 30분, 8시간 이상일 때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르바이트의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응답자가 7.7%라는 점을 고려하여도, 많은 청소년들이 별도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험했던 아르바이트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응답한 인원 중 14.1%가 평균 4시간을 근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응답자도 1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응답한 인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약 7시간 9분이었음

- **경험했던 아르바이트의 주당 평균 근무일 수**
 -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던 응답자 가운데 매일 근무하는 응답자는 4%이었으며, 주당 2일 근무를 하는 응답자가 49.2%로 가장 많았음

- **22시 이후 근무 경험**
 - 현재 혹은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 중 22시 이후에 근무한 경험의 유무는 “있음”이 22%, “없음”이 7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아르바이트 장소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음.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 노동(오후 10시~오전6시)과 휴일 노동이 금지되어 있음. 당사자가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급여 형태와 급여 금액**
 - 급여 형태는 시급제가 66%로 가장 많았으며, 일당제가 16%, 월급제가 5%로 뒤를 이었음. 실적제는 4명(1%)으로 가장 적었음
 - 평균 시급은 6,216원이었으며, 이 중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에 미달하는 응답자는 8.6%나 되었음. 평균 일당은 55,915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주급은 121,476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월급제의 경우 평균급여는 551,336원 이었으며, 실적급여액은 22,350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아르바이트 과정중의 노동인권 실태**
 -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많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사됨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53.3%(430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노동할 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구제할 근거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줌.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청소년들이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작은 지역사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알바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관례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음

- “손님이 없어 1~2시간 나갔다 오거나 조기퇴근을 요구받은 경우”는 20.2%(163명)이 경험하였음. 일명 “꺼기”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사 항임.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곳이 4인 이하 사업장이라서 “꺼기”를 해도 현재 법률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따라서 “꺼기”를 방지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률적 개선이 요구됨
- 1주 15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주휴수당¹⁾ 받지 못한 청소년이 16.9%로 나타났음. 근로자가 1주 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로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노동법에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우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 대상이 됨
-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가운데 15.6%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음. “급여를 계약사항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은 경우”도 14.1%이나 되었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거나 관련 질병을 앓은 경우도 14.1%이나 되었음.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노동에 종사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청소년도 13.4%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청소년의 13.4%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음. 주40시간의 법적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강요받은 응답자도 11.7%에 이룸. 업주나 상사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겪은 응답자는 8.7%,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경우도 8.7% 있었음
- 매출 정산과정 중 차액이나 손실, 분실물에 대해 직접 배상한 경우는 8.3%,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5.7%로 조사됨. 또한 업무에 필요한 용품 등을 강제 구매한 경우도 4.1%나 있었음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14.1%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환경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줌
- 이 설문을 통해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부당 대우를 받고 있으며, 특히 53.3%가 가장 기초적인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조기퇴근(꺼기), 주휴수당 문제, 임금 부분 미지급,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불,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 관련 위반비율이 44.1%에 달하고 있음. 거의 절반의 청소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아 (53.3%) 법적으로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1)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수당임

〈표 2〉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경험

(단위 : 명)

순번	질문	예	아니오
1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	430 (53.3%)	377 (46.7%)
2	손님이 없어 1~2시간 나갔다 오거나, 조기 퇴근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163 (20.2%)	642 (79.8%)
3	1주 15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136 (16.9%)	667 (83.1%)
4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126 (15.6%)	680 (84.4%)
5	급여를 (계약했던 것 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았다.	114 (14.1%)	697 (85.9%)
6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	113 (14.1%)	689 (85.9%)
7	수습사원(3개월)이라며 임금을 최저임금(2015년 5,580원/2016년 6,030원)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다.	108 (13.4%)	694 (86.6%)
8	법적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94 (11.7%)	708 (88.3%)
9	업주나 상사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낀 적이 있다.	71 (8.7%)	732 (91.3%)
10	업주나 상사에게 폭행, 폭언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	70 (8.7%)	733 (91.3%)
11	정산과정 중 차액이나 손실, 분실물들을 임금에서 보상한 적이 있다.	67 (8.3%)	738 (91.7%)
12	1주 15시간을 넘겨 1년 이상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45 (5.7%)	751 (94.3%)
13	업무에 필요한 물품, 작업복 등을 특정제품으로 구매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다.	33 (4.1%)	768 (95.9%)

●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견해

- “청소년 노동인권의 개선을 위해 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균 3.60으로 가장 높았음. 청소년의 알바, 현장실습에서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이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줌.(1점: 전혀 그렇지 않음 ; 5점: 매우 그러함)

03

심층 인터뷰 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 2016년 10월 4일 충남교육청에서 충남교육청 관계관, 특성화고·마이스티고 교사 5명, 특성화고 재학생 3명을 초청하여, ①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친구로부터 들은 알바 현장의 실태와 구체적인 노동인권침해 사항, ②현직 교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동인권 침해 사항과 이에 대한 대처, ③노동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학생·교사들의 제안 등을 조사함

2) 조사 분석

- 불법 연장근무
 -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하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그러나 협의 없이 연장근무를 하고, 심지어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학교 선배나 불량학생에게 협박을 받아 원치 않게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됨. 현장 실습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업체 블랙리스트가 있고, 부당한 조치를 당한 학생이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귀교 조치하고 있으나, 위계에 의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연장근무 추가수당 미지급
 - 일부 청소년의 경우에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기본적인 임금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某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평일에는 보통 최소 4시간, 보통 6~7시간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기도 함. 서류상으로는 8시간 근

무하는 것으로 하고, 편법적으로 추가 근로시간은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대기업의 경우에는 출퇴근카드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추가 근로가 어렵지만,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편법적으로 추가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차별 문제

- 근로기준법 제6조는 노동자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뷰 응답자들은 학벌·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

- 근로계약서 미 작성

- 근로계약서 미 지급시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학생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고 있음. 많은 학생들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 작은 규모의 식당,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

- 인격적 모독

- 근로기준법 제8조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은 물리적 폭행뿐만 아닌 폭언도 포함됨. 그러나 학생들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 및 상사에게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위계, 위력에 의한 원치 않는 근무

- 헌법 15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7조 내지 9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강제적 근로가 금지 되어 있으나 청소년들은 학교 선배나 불량학생의 협박강권에 의해 원치 않게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부당 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급을 적게 받아 항의하자 다음날 해고를 당한 학생도 있었음. 청소년들이 정당한 임금, 휴식시간, 주휴수당 등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음. 시골의 경우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한 식당에서 해고당하면 인근 다른 식당에서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휴식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심지어 휴식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었음

- 인권침해 사항 신고 미비

- 근로계약서 작성, 가산수당 등을 학교에서 교육받아 알고 있으나, 어리기 때문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음. 알바가 끝나고 나서도 급여기록만 있으면 사후에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설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유로 청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청소년 불법 노동으로 인한 인권사각지대

- 음식점에서는 법적으로 학생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현실적인 문제로 학생들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도 있음. 학생들은 음식점에서 술을 나르는 심부름을 할 수 없지만, 주인의 요구에 의해 술심부름도 하고 있음
- 퇴폐 노래방에서 근무한 학생이 폭행당한 경우도 있음. 이 학생의 경우 불법업소 근무이기 때문에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학교에 알리기도 꺼려함. 이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등 사각지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현장실습 문제점

- (1) 변형된 취지

- 고용촉진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실시되는 현장실습의 본래 취지는 노동이 아닌 교육적 직업실습이지만 본래 목적보다는 취업률을 높이려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취업률로 계산되기 때문에 진정한 현장실습의 목적이 아닌 알바 혹은 식당 등에서의 노동으로 현장실습을 대신하고 있고²⁾, 학교에서는 이를 정부의 취업률 제고 정책 때문이라 말하고 있음
- 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 현장실습을 나가기도 하고, 실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취업을 전제로 현장실습을 받는 경우도 있음

2) 단 공업계열에서는 교육목적상 현장실습의 필요성을 일부 이야기하였음

(2)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사업장

- 학교에서 실습을 보내는 목적과 현장에서의 현실 간 괴리감이 심한 것으로 조사됨. 공업계열의 경우 전공과 관련 있는 실습은 약 30%에 불과하고, 상업계열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 노동 인권 교육 문제점

(1) 특강 형식의 노동인권 교육으로 집중도 저하

- 현재 노동 인권 교육이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의 집중도가 떨어짐

(2) 노동인권에 대한 사업체의 몰인식

-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련 법조항을 준수하고 있음
- 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중 가장 큰 비중(24.8%)을 차지하는 음식점 등의 지역 사회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는 노동 관련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법적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청소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 청소년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장님이 어른이거나 동네 아주머니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우리 사회의 고정인식 때문에 관련법이 제정 되어 있음에도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쉽게 개선되지 않음. 따라서 고용주나 상사의 노동인권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청소년 노동인권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움

04 정책제언

1.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인식 강화
 -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청 차원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전담기구(센터) 설치
 - 청소년노동에 대한 부당위법사항을 신고 받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요구됨. 전담기구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총괄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노동인권 교육, 노동법률상담, 권리찾기 지원, 현장실습 정상화 지원 등이 있음. 전담기구는 충남도청과 교육청이 협조하여 공동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는 학교 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이기 때문임.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는 교육청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도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음
- 근로기준법 제70조 개정
 -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하면,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야간 노동(오후 10시~오전6시)과 휴일 노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음.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70조 2항 1호 (당사자의 동의) 와 70조 2항 단서 (노동부장관의 인허가)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

- 현행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은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서 “깍기”를 해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법률상 없음. 청소년 대상 임금 깍기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1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현장실습 개선사항

- 취업률 중심의 특성화고 평가를 개선

- 현장실습을 본래 취지의 현장 교육 목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업률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사업을 평가하는 기존 기준이 변경될 필요가 있음. 현장실습은 학교의 직업교육 일환으로 자율적인 체제를 추진하는 구조가 중요함. 교육부에서 취업률을 평가기준으로 교육청 사업예산을 배분하더라도, 충남 교육청이 특성화고에 사업예산을 배분할 때 취업률 기준의 비중을 낮추어서 적용할 수도 있음. 교육부의 평가기준이 때에 따라 진학률, 취업률 등으로 변하기 때문에, 충남 교육청도 평가기준인 취업률의 적용을 낮출 수 있음

- 현장실습용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및 사용 의무화

-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실습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부당위법사업장 현장실습 금지

- 현장실습의 근거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현장실습의 경우 부당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도청, 센터 전문가, 학교 선생님, 노동부 감독관이 공동으로 해당 산업체를 조사점검하고 고소,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함

3. 노동인권 교육 개선사항

- 노동인권교육 형식 변화
 -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 인권 교육은 주로 특강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 인권 교육을 교과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것이 어렵다면 “진로와 지도” 교과목의 부분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처럼 자체적으로 노동인권 교육책을 마련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체계화해야 함

- 사업체의 노동인식 개선 교육
 - 소규모 개인사업장에서 청소년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음. 식당 등 개인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안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기본적 노동인권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교사들의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개선
 - 청소년에 대한 교사들의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시책연수교육에 청소년 노동인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일반학교 확대 실시
 - 특성화고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 교육을 일반학교에도 확대해야 함

성 태 규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041-840-1270, tgsung@cni.re.kr

※ 본 연구는 『충남의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 연구』(충남연구원 전략연구 2016-21)를 요약, 재구성한 것임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2014), 천안시 편의점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2015),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제안서

충청남도(2015), 충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